

KERIS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2007-5

#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과 정책 방향

# 차 례

I. 들어가며 .....	1
II.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와 문제점	
1.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 모습 .....	2
2. 교육정보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7
3. 교육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현황 .....	8
III. 교육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의 법적 지위	
1. 학교의 법적 지위 .....	9
2.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새로운 법적 지위 .....	10
IV.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	
1. 학교의 법적책임에 관한 근거 .....	11
2. 학교의 법적책임에 관한 일반론 .....	12
3.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일반적 법적 책임 .....	13
4. 새로운 법적 지위에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과 의무 .....	14
V. 학교의 새로운 법적지위에 따른 교육정보화 정책 제언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책 방향 .....	19
2. 개인정보수집 및 관리자에 대한 정책 방향 .....	21
3. 저작물이용자에 대한 정책 방향 .....	21
4. 그 외에 고려할 사항 .....	22
참고문헌 .....	23

#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법적책임과 정책 방향

## I. 들어가며

-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
- 정보화로 인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sup>1)</sup>

과거(산업사회)	현재 + 미래(지식정보사회)
1. 공급자 중심 교육	1. 수요자 중심 교육(다양화, 개별화)
2. 교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학교 중심의 교육)	2. 교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 초월 (학교교육 + 원격교육)
3. 소수에 의한 교육정보의 소유 (전통적인 교사)	3. 다수에 의한 교육 정보 공유 (학습의 안내자)
4.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분리 (교과서 중심)	4.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동일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 제공)
5. 느린 정보 유통 속도	5. 순간적인 정보 유통
6. 컴퓨터 리터러시	6. 정보활용능력 중시

- 그러나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해 학교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이 글에서는
  - ①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 모습과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분석,
  - ② 교육정보화관련법령 분석을 통해 학교의 새로운 법적지위와 역기능에

1) 李玉禾·千歲英, “情報社會의 到來와 教育의 變化 展望”, *교육학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1996, p. 194.; 이장익, “혁신과 변화(Innovation and Change)의 관점에서 본 교육정보화의 의미”,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14권, 1998, p. 144; 김종량, 『교육공학』, 문음사, 1994, p. 18.; 이성흠, “정보화사회에서 교육체계의 변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교육개혁”,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16권, 2000, p. 190.; 권이종 외, 『신교육사회학탐구』, 교육과학사, 2001, p. 480. 참조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사항을 검토하고,

- ③ 학교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II.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와 문제점

### 1.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 모습

#### 1.1 개관

- 5·31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육정보화가 추진된 1996년을 기준으로<sup>2)</sup> 학교의 변화모습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1995년 이전	1996이후
학교	유형	◦ 오프라인상의 학교(학급)	◦ 오프라인상의 학교 + 온라인의 학교와 학급
	행정업무	◦ 장부중심의 문서형태	◦ 전자화된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 활용
	정보공개	◦ 문서형태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시
	보안	◦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 정보(통신)보안 추가
교직원	구성	◦ 교장, 교감, 교사 등	◦ 교장, 교감, 교사, 사이버튜터, 전산보조원
	직무분장	◦ 교무, 연구, 과학, 체육 등	◦ 교무, 연구, 과학, 정보, 체육 등
	연수방법	◦ 집합교육 중심	◦ 집합교육 + 원격연수 ◦ 정보통신소양 및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교육과정	내용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초, 중, 고)	◦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운영지침 신설 - 초등학교 : 실과, 재량활동 - 중등학교 : 가정 · 실과, 재량활동
	교과	◦ 10개 학년 10개 교과	◦ 선택과목으로 컴퓨터 교과 신설

2) 교육정보화의 발전단계를 역사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태동기, 발전기, 도약기, 확산기로 구분할 수 있고, 교육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 제1차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이후라 할 수 있다.

교과서	형태	◦ 서책형 교과서 + 영상, 음악저작물	◦ 전자저작물 추가 ◦ 디지털교과서 도입추진
수업방법	유형	◦ 일방향 면대면수업	◦ 일방향 면대면수업 + 쌍방향 원격수업
	수업자료	◦ 문서중심의 학습자료 활용	◦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용콘텐츠 활용
	정보공유	◦ 제한적 수단과 방법에 의한 교육정보 공유	◦ 체계적이며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교육정보 공유
시설설비	교실	◦ 일반교실 등	◦ 멀티미디어(혹은 컴퓨터)교실 신설
	기기	◦ 컴퓨터, 프린터 등	◦ 프로젝션 TV, 빔프로젝트, 네크워크장비 등

- 즉,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교의 변화는 단순히 학교의 물적 환경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원, 직무수행방법,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 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됨
- 현재까지의 학교의 변화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2 원격학교(학급)의 설립·운영

-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로 사이버공간에 학교(학급)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수업의 시공간상의 제약을 탈피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초중등교육에서 정규수업으로 원격교육을 인정하는 경우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병원학교이며, 비정규수업(방과후 학교 등)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예는 사이버가정학습(학급배정형과 학급지원형)임
  - ※ 1974년에 설립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006년부터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라디오방송과 동일한 지위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2008년까지 전학년에 적용 예정,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사이버고등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학기제, 교원확충방법,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
  - ※ 2005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이버가정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

교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배정형, 학급지원형, 자율학습형의 모델로 학습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은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 및 심화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2006년 말 약 200만 명 가입·운영)

※ 병원학교는 99년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2007년 현재 총 24 개가 개교(월 평균 800여명 참여)되어 운영될 예정임

- 직장인·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원격대학<sup>3)</sup>은 2000년에 도입되어 9개 대학이 인가되었으며, 2007년 현재까지 총 17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 1.3 교육정보화 추진 인력 지원

- 초중등학교의 경우 정보부장을 중심으로 교육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시 학교장 재량의 전산보조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지원받고 있음

※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전산보조원은 2005년 현재 3,234명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년 교육정보화 백서)

※ 교육행정기관은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국가차원 : 정보화추진위원회,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지방차원 :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시도교육청직속기관으로 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 대학의 경우 대학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대학이 러닝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2007년 현재 총 10개 대학이 e-러닝지원센터로 지정

---

3) 원격대학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종래 상당한 다툼이 있어 왔고, 이에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로서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이관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자 한다.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e-러닝을 통한 교원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1.4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

### 1.4.1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 신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변화와 공교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 초중등학교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동안 정보소양교육과 각 교과별 교수학습에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10%이상 하도록 규정함  
※ 2000년 제정된 초중등학교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은 2005년 12월 정보통신윤리교육 부족, 정보인재 육성 기반 미흡,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보통신기술교육의 내용 재구성, 교육과정과 운영지침의 시간적 괴리 등을 이유로 이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1.4.2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공유를 통한 ICT 교수학습활동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보공유체제, 교수학습센터, EBS수능방송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용콘텐츠를 개발·공유·보급·관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교단선진화기기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 등에 이용하고 있음  
※ 교육정보공유체제는 2002년 5월 에듀넷과 16개 시·도교육청을 연결하여 교사나 개별교육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교육용콘텐츠를 공유·보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교수학습센터는 교육현장에서 e-러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중앙단위 교육유관기관(에듀넷을 중심으로 한 중앙교수학습센터)과 시도교육청(교수학습지원센터)을 연계하여 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에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임  
※ EBS 수능방송서비스는 2004년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함으로써 국민의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추진되고 있음

## 1.5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학교업무 전자화

### 1.5.1 학교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교육정보(Education records)의 수집·관리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위해 2003년 교육정보 시스템(NEIS : Nation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고<sup>4)</sup>, 총 27개 영역의 업무를 전자화함
- 2003년 구축된 교육정보시스템은 학생의 교육정보를 수집·관리할 법적근거부재와 학생의 교육정보 유출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 정보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교무/학사, 보건 영역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함
- 2006년 3월 교육정보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함으로써 해당학교는 이를 통해 행정업무 및 종합생활기록, 건강기록 등을 수집, 관리, 처리하고 있음

### 1.5.2. 홈에듀(Home-edu)민원서비스 등

- 홈에듀민원서비스는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와 정부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졸업증명서 등 재증명발급과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기존의 교육정보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을 구축하여 각급 학교 현황, 학교주변 교육환경, 학교주변 안전시설, 통학로 등 교육현장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임

---

4) 교육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소위 “나이스”나 “네이스”나의 논쟁)을 구축·운영하여 2006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상 명칭은 “교육정보시스템”이며, 이 글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이라 명명하고자 함.

## 1.6.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 1.6.1 학내전산망 구축과 교육정보화 시설·설비 도입 및 관리 등

- 1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1996-2000)에 따라 2000년 12월 전국 초중등학교는 학내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 학교의 인터넷 연결망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따라 집선형 연결방식과 통신사업자에게 개별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각급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시설 및 설비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교는 컴퓨터실(혹은 멀티미디어교실)을 설치하고, 프로젝션 TV, 뷔프로젝트, 컴퓨터 등과 같은 H/W 이외에 사무용 S/W, 교육용S/W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1.6.2 학교홈페이지의 제작, 운영, 관리와 정보공시

-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교수-학습자료 제공, 교육정보 공유, 정보 공시 등을 위해 학교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관리하고 있음
  - ※ 정보화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을 작성,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였으나, 학교 및 학급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해당정보에 제공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학습자료 제공, 숙제 제출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학교홈페이지 운영방식은 학교 자체서버를 통해 운영하거나, 웹호스팅(시도교육청 혹은 민간 업체 등)을 통해 운영하는 등 다양함
- 학교홈페이지는 학교 경영 및 운영현황, 교직원 현황, 시설 및 예산현황 등 학교경영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sup>5)</sup>

5)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책정보, 사업정보, 예산정보 등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교육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2007. 4. 30)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 교육정보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2.1 학교홈페이지의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한 역기능 현상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상업성 광고, 음란 정보, 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차단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그대로 서비스되고 있거나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음
  - ※ “학교홈페이지는 유해사이트”(부산일보, 2007. 4. 3)
  - ※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제주일보, 2007. 4. 18)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의소통과 학습의 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각종 욕설, 비방의 글 등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방치되고 있음
  - ※ “학생 거짓말에 매장될 뻔한 교사”(조선일보, 2007. 3. 26)

### 2.2. 학교 전산망의 보안사고 증가

-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 정보망에 대한 사이버침해 건수 매년 증가
  - ※ 2005년까지 국가·공공기관 중 교육기관의 사이버침해사고가 1위였으나, 2006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다소 경감되었지만, 교육기관의 사이버침해사고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국가사이버안전센터, 월간사이버시큐리티(1월호), 2007)
  - ※ “학교전산망은 해커천국, 인터넷만 설치, 보안엔 무방비”(동아일보, 2001. 5. 5.)

### 2.3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사고 우려

- 전국 초중등학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은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각종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 사고나 침해 우려가 높음
  - ※ NEIS 회계 부정에 무방비(강원일보, 2006. 10. 31)
  - 교육부, ‘145만 학생정보 유출’ 조사 착수(오마이뉴스, 2006. 12. 1)

## 2.4 학교교육목적상 저작물 이용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제한

- 학교 수업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야 하는데, 학교교육목적상 공표된 저작물 공정이용 대상기관, 이용방법 및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음  
※ 광주 S고 과학교사로 재직하던 교사가 저작권 침해를 스스로 인지하고 피소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음독 자살(연합뉴스, 2005. 5. 16)

## 3. 교육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현황

### 3.1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 2005년 교육기관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추진조직 및 체계 확립(학교당 1명의 정보통신보안담당자(겸무)) 지정,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방화벽, 백신자동업데이트, 서버 보안, DB 보안 등), 법제 마련(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등)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추진
- 2007년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 :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를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와 대학단위의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 Cyber Emergency Response Team)을 통해 사이버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추진 조직을 완비하여, 교육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 예정

### 3.2 시도교육청의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 지원

- 2005년 유해정보차단종합계획에 따라 건전한 사이버문화조성을 위해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 특히, 유해정보차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차단, 유해사이트 및 P2P 차단, 스팸메일 차단, e-Clean PC 환경 구축을 강화하고,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 초중등학교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 개정(2005. 12)
- ※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제공(2005년 이후)

### III. 교육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의 법적 지위

#### 1. 학교의 법적 지위

##### 1.1 요약

구분	법적지위	교육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지위
국·공립학교	◦ 영조물(독립행정청, 특허 기업, 자치단체) <sup>6)</sup>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계시판 운영·관리자 ◦ 교육정보 수집·관리자 ◦ 저작물이용자
사립학교	◦ 재단법인	

##### 1.2 학교의 개념

- 학교의 개념에 대해 법률은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곳’ 혹은 ‘공교육을 하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음
  - ※ 여기에서 공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교육이라 정의됨

##### 1.3 학교의 법적 지위

- 학교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흔히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음
  - 국·공립학교의 법적지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법인격없는 영조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독립행정청, 특허기업,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6) 국·공립학교의 법적지위에 대해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는 주로 영조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으나, 최근 행정법학자나 교육법학자들에 의해 독립행정청, 특허기업,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별한 공공목적(혹은 행정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인적·물적 결합체를 말함<sup>7)</sup>
  - 사립학교의 경우 사법상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2.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새로운 법적 지위

### 2.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법적지위

-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게시판 등)의 제작 및 관리, 교수학습자료와 각종 교육정보의 제작·유통·보급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보이용자, 정보제공자와 정보매개자, 게시판 관리·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갖음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역할에 따라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sup>8)</sup>
- ※ 정보제공자(IP 혹은 ICP : Internet Content Provider)란 직·간접으로 정보를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탑재하는 자를 말하며, 정보매개자(ICH : Internet Content Host)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에 정보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자를 말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흔히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2.2 교육정보의 수집·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

- 교육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3조의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 내지 제

7)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p. 1062; 金東熙, 『行政法 I』, 博英社, 2007. p. 80.; 李京運, 營造物과 그 設置主體와의 關係, 公法研究 第24輯 第4號, 韓國公法學會, p. 384

8)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그 역할에 따라 분리하여 과악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30조의 7, 교육정보시스템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업무를 전자화함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하는 학생생활기록이나 건강기록에 포함된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교육정보, 그리고 교육행정정보 등의 수집·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음

### 2.3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이용자로서의 법적 지위

- 학교와 교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각종 학습자료(교육용 콘텐츠)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저작권자이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On/Off-Line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저작물)를 이용하는 저작물이용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있음

## IV.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

### 1. 학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근거

-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령을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구분	관련법령	법적책임과 의무
학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일반론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제5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이용자의 권익보호/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제3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4조의 7)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시책 이행의무(제41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이하) 게시판 설치운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제44조의 5)*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처리/열람·정정 등

	교육기본법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제3자에 대한 무단 제공 금지(제23조의 3)
학교교육과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작성·관리(제25조)
		학생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처리(제30조의 5)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제한(제30조의 6)
학교교육과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등(제4조 이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특별법	초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정보공개 및 공시제도 규정(2008년 5월부터 시행)
저작물이용자로서의 책임	저작권법	수업목적상 필요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복제방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 부과(제25조)(2007년 7월부터 시행)

## 2. 학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일반론

### 2.1 학교사고의 개념

- 학교사고란 학교사고, 학생사고, 학교재해,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불려지고,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라고 광의로 정의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장 및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면에서 학생에 대하여 생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말함<sup>9)</sup>

### 2.2.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 혹은 지도감독 의무

- 학교장, 교사 등은 학교교육에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호의무와 지도·감

9) 흔히 이를 학교사고, 혹은 학교안전사고라 정의하고 있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학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협의로 정의하고 있고, “학교교육활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입는 신체적인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심병연, “學校事故와 損害賠償”, 判例研究 1998(99. 1.), 344-345쪽; 河潤秀, “學校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慶星法學 4號 (95. 8.), 125쪽; 齋藤隆, “學校事故に關する國家賠償”, 現代民事裁判の課題 ⑩ 國家賠償, 257面.)

## 독의무가 있음

- 학교의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나 지도·감독의무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와는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 즉, 학부모는 자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가지나, 교사나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분가분의 관계에 있는 활동에 한하며 보호 및 지도감독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통상 학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학교 사고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  
※ 학교 인근 야산에서 집단구타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나 교사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음<sup>10)</sup>
-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사나 교직원이 보호의무나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교사개인은 이와 같은 의무위반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교사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756조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짐

## 2.3 학교의 시설·설비 관리에 대한 책임

- 학교의 시설·설비란 학교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고,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을 포함하며, 학교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 따라서 학교의 시설·설비란 동산·부동산 및 인공공물·자연공물을 모두 포함하고, 교사(校舍), 교지(校地), 운동장, 책상, 의자, 실험용 비이커에 이르기까지 유체물인 학교시설을 모두 포함<sup>11)</sup>
- 학교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시설·설비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10)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11)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5302 판결

것으로서, 당해 시설·설비가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시설·설비의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설비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시설·설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
- 학교의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학교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으로서 학교 시설·설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3.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교의 일반적 법적 책임

#### 3.1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 및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히 관련있는 범위내에서 즉,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이나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자유시간을 통해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 사이버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몰입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와 연계하여 주변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을 통해 보호와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교사나 교직원의 보호의무 및 관리·감독의무 위반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함  
※ 예컨대 학교수업시간에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와 같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경우 등

### 3.2 교육정보화 시설 · 설비 관리하자에 따른 법적 책임

- 교육정보화 시설 · 설비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교육정보화 시설 · 설비(학교서버, 학내전산망, 교육정보시스템 등)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말함
- ※ 예컨대, 학교 서버를 설치하면서 방수시설이 불완전하여 학교서버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서버에 보관된 정보가 유실된 경우라면 설치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학교사고라 볼 수 있고, 학교 서버 설치 이후 사이버공격(유해사이트, 스팸메일,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나 적절히 업데이트 하지 않아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방화벽 설치,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스팸메일차단프로그램 등 학교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시설 ·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 설비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4. 새로운 법적 지위에 따른 학교의 법적 책임과 의무

### 4.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 정보통신망법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는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 운영함으로써 정보제공자(IP 혹은 ICP)와 정보매개자(ICH)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개인정보의 보호,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버스 제공, 이용자의 권리보호,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에 이바지해야 함

#### 4.1.1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있음, 즉, 자신이 제작한 정보가 불법정보<sup>12)</sup>나 청소년유해매체물<sup>13)</sup>, 저작권법 위반 정보<sup>14)</sup>,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메일<sup>15)</sup>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됨

※ 충남의 모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정보를 탑재하여 미술시간에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정직(停職)되었음<sup>16)</sup>

#### 4.1.2 정보매개자 및 게시판 관리 · 운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 정보매개자나 게시판의 관리 · 운영자가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음란정보, 명예훼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없음
- 판례는 정보매개자와 게시판 운영 · 관리자에 대해 당해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음, 즉, ①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했거나, ② 우연한 기회나 권리자로부터 이의제기에 의해 이용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경우, ③ 이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와 같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

12) “불법정보”란 법률에 의해 해당 정보의 유통, 보급이 금지되는 정보를 말하며, 불법정보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규정하고 있음

1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해당 정보의 제작, 유통, 보급이 성인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해 유통, 보급하는 것만이 금지되는 정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의 유형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sup>11)</sup>를 거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최종 결정·고시한 매체물을 말함(청소년보호법 제7조 이하)

14) “저작권법 위반 정보”란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한 이용방법에 의해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대개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15) “영리 목적의 광고 메일” 중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흔히 “스팸 메일”, “정크메일”, “벌크메일”이라 하며, 옵트아웃방식과 라벨링방식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여기에서 옵트아웃(opt-out)방식이란 수신자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에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가 옵트인(opt-in) 방식이며(옵트인 방식은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메일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함), 라벨링(Labeling) 방식이란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메일에는 광고성 메일인지, 성인정보인지를 표시할 것과 전송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 하는 방식을 말함

16) 대법원 2005. 7. 22선고, 2003도2911판결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 결국, 정보제공자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정보제공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짐<sup>17)</sup>

※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판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서강대학교는 이와 같은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불법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sup>18)</sup>

- 그 외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게시판 운영·관리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게시판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함(2006년 12월 22일 개정, 2007년 7월 말부터 시행하며, 시행령을 통해 적용기준을 구체화 할 예정임)
  - ※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으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 과거에는 이를 흔히 “인터넷 실명제” 혹은 “게시판 실명제”라 명명하였음
- 또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 경우와 이와 같은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

17)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여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명예훼손 정보의 유포를 방지한 책임을 묻는 판례가 등장하였고,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 5. 19 조선일보)

18) 서울지법, 1999. 12. 2선고, 98가합111554 판결

으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음

#### 4.2 교육정보의 수집,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내지 제30조의 7에 의해 학생의 개인정보(학교생활기록과 건강기록 등)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 관리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정 사유이외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이용이 제한됨
- 그 외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관리자로서 책임을 짐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교육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분화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 후자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  
※ 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규칙 참조
- 특히,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 교육정보의 열람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권한관리자를 임명하고, 권한관리자는 교육정보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변경, 폐지 등을 관리해야 함
-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정확성, 최신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집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내용, 목적 등에 대해 년 1회 이상 관보에 게재·공고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누설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함.  
※ 헌법재판소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합헌으로 판정<sup>19)</sup>

---

19) 헌법재판소 2005. 7. 21.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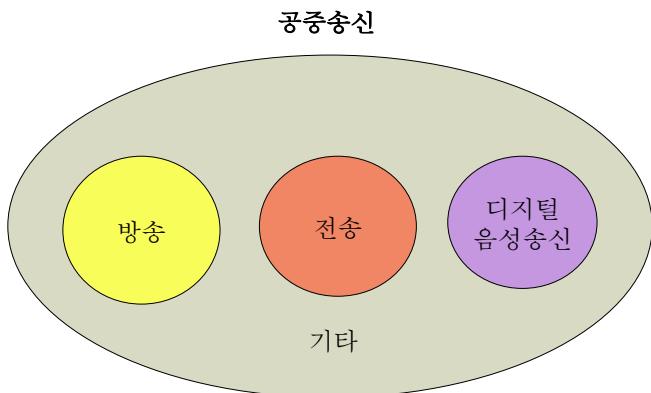
### 4.3. 저작물 이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통해 저작문화의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공공목적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의 수업목적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하는 것임
- 지식정보시대의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2006년 12월 26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수업목적”상 이용하는 경우로 그 목적을 명시하였고, 초중등학교 교사가 수업목적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범위로 복제, 방송, 공연 이외에 전송권을 추가로 확대하였음(저작권법 제25조 ②와 ④)  
※ 개정전 저작권법 제23조에는 학교교육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범위를 복제, 방송, 공연으로 한정하였음
- 둘째, 초중등학교 교사 이외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컨대 과제물 제출 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25조 ③)
- 셋째, 舊저작권법에 따르면 학교(교육기관)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학습자료라도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제방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된 저작권은 방송, 전송 이외에 공중송신과 디지털 음성 송신의 개념 도입을 도입하였고, 전송의 개념에 대해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

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e-메일, P2P 등에 의한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 공중송신,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도



※ 여기에서 “복제방지조치”를 해야 할 주체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용자가 복제하지 못하도록 “다운로드 방지” 혹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한 웹페이지 복사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07년 6월 이후 시행 · 적용됨

## V. 학교의 새로운 법적지위에 따른 교육정보화 정책 제언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책 방향

#### 1.1 화이트리스트필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초중등학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구축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필터링 프로그램은 블랙리스트(Black-List)<sup>20)</sup>를 사용하고 있는데, DB목록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체되거나 대상목록이

20) 블랙리스트 필터링이란 특정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화이트리스트 필터링이란 특정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임

학교현장에 부적합하므로 특정허용DB에만 접근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필터링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의 경우 이미 2002년 아동·청소년도메인촉진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고자 서브도메인으로 Kid.u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화이트 리스트 필터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도 학교와 도서관에 연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E-rate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강제하는 법률(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음(United States v. ALA, 123S.Ct.2297(2003))

### 1.2 옵트인(opt-in) 방식을 통한 스팸메일 차단 강화

- 학생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원인 중 하나가 스팸메일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데, 정보통신망법상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옵트아웃방식과 라벨링 방식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용자(학생이나 교사)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 도입하여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 있음

### 1.3 보안사고 대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필요

- 사이버폭력을 통한 보안사고에 대비하는데 있어 교육기관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임<sup>21)</sup>
- 예산상의 문제로 모든 학교에 보안전문가 배치가 어려울 경우, 학교 인터넷망 구조를 교육청단위의 집선형으로 유도하고, 교육청 단위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교육청단의 전문업체를 통해 보안사고 대처 필요

---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학교 유해정보차단 실태조사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보고서, 2005

#### 1.4. 학교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하면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판 기능을 둘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 게시판 운영자의 본인확인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또한, 게시판 등에 불법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상업성 광고와 같은 유해매체와 명예훼손, 욕설 등의 보호되지 않는 표현이 탑재 혹은 링크된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수업목적에 필요한 교육용콘텐츠 전송 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으나 복제방지조치를 의무화함
  - ※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의 복제방지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저작권법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은 학교홈페이지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개인정보보호정책, 유해정보차단정책, 게시판 운영정책 등)을 마련하여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개인정보수집 및 관리자에 대한 정책 방향

- 학교에서 학생 등의 교육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집·관리되는 정보가 학생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대학입시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수집·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시설·설비의 관리책임과 수집되는 교육(행정)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안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3. 저작물이용자에 대한 정책 방향

#### 3.1 저작권법 제25조의 개정과 시행령 개정 방향

-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교육목적을 위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학교교육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저작권법 제25조 제2조의 적용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즉,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수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수학습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이 요구됨
-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근거한 복제방지조치는 시행령 개정안 제8조에서 구체화시키려 준비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살피고, 학교 현실을 고려한 복제방지조치(제한적 사용자 인증조치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2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제 · 개정

-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은 “교과용도서보상금기준” 및 “도서판보상금기준”을 고시하고 있음
  - 현행 “교과용도서보상금 기준”에 의하면 서책형 교과서에 대한 보상금 기준만을 고시하고 있어, 교과서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전자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보완해야 함
  - 특히, 디지털교과서가 제작 · 보급되기 위해서는 매체의 유형별 보상금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문화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규정은 서책형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멀티미디어자료(영상, 음원,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상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발행부수기준(1만부)에서 디지털교과서 보급방법에 따라 변화되어야 함

## 4. 그 외에 고려할 사항

### 4.1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법제적 근거 마련

- 사이버가정학습을 학교의 정규수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컨대 장기입원환자나 통원치료 중에 있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정규수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수업, 도서벽지지역의 특정교과 전담 교원 부족으로 인한 수업 결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하는 경우, 사이버가정학습 담당 교원의 수업시수 인정 및 학생의 수업이수를 인정을 위한 법제적 근거마련 필요
- 그 외에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나 주말학교와 연계하는 방안 고려  
※ 국회는 입법안으로 “학령기아동·청소년보호와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김현미 의원)”, “아동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최순영 의원)”이 계류 중이므로 사이버가정학습과 연계하는 방안 고려 필요

### 4.2 학교의 유해정보차단조치 의무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교육정보화에 따라 학교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실현해야 하며, 학생이 정보화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 정책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교육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3조의 3을 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신설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